

정기 종합감사

2018.2.5 ~ 2.13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8.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금융결제원 현황	2
1. 일반현황	2
2. 연도별 수입·지출 내역	3
III. 감사실시 결과	4
1. 분야별 감사결과	4
2.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25
3. 감사결과 처리요령	27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최근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는 2013. 11월 실시

□ 감사기간 : 2018. 2. 5(월) ~ 2. 13(화), 7일간(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수익사업, 의사결정기구, 예산·회계, 조직·인력, 중요시설 관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9명*

* 은행과 1명, 금감원 2명, 회계기준원 1명 지원 포함

□ 감사중점

-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의 적정성

*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공동전산업무 및 기타 수익사업등

-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금융공동망등 중요시설 관리 및 보안업무 추진실태

- 사내복지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등

II. 금융결제원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설립

* 전국어음교환관리소('84.5)와 은행지로관리소('77.6)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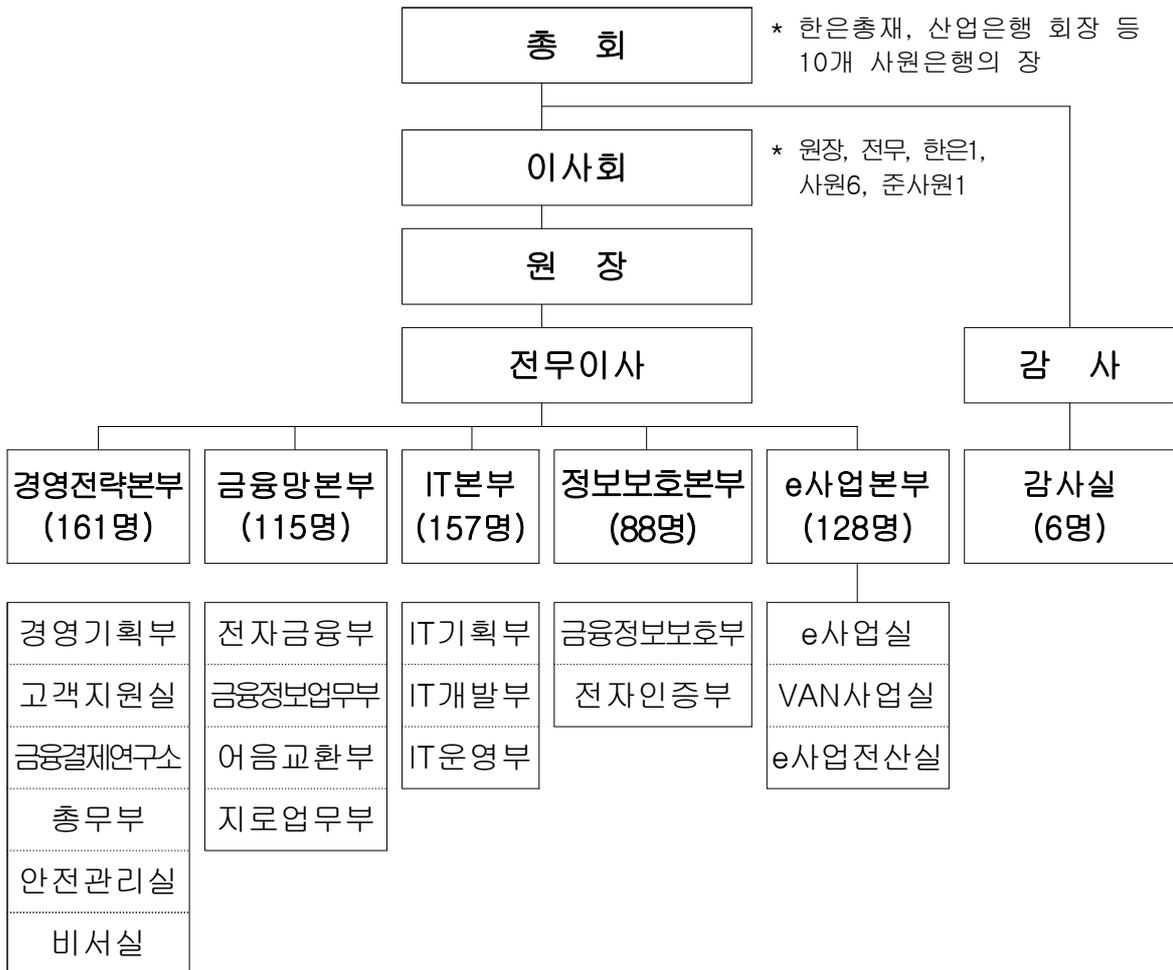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 조직 및 인원 : 5본부 11부 7실 1연구소, 662명(임원 7명)

※ 원장 : 이흥모(61세) / 서울대(무역학과), 한국은행 부총재보('14.8 ~ '16.3)

감사 : 황문연(58세) / 고려대, 대통령정책기획위원회 과장, 미래기획위원회 단장

【조직 및 인원(현원 기준)】



□ 주요업무

- 어음교환소 설립·운영 및 지로제도 운영
- 금융공동망(CD, 전자금융, 타행환 등) 구축·운영
-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공인인증, 주택청약 등)
- 신용카드 관련 부가통신사업(VAN 등) 등 수익사업 등

2.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일반사업)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E)
수입총액(a)	1,155.1	1,162.7	1,243.3	1,284.9
• 기본회비 ¹⁾	158.0	191.6	214.2	216.6
• 실적회비 ²⁾	764.1	779.0	856.9	866.3
• 자체조달자금 ³⁾	233.0	192.1	172.2	202.0
지출총액(b)	1,070.8	1,100.4	1,172.1	1,216.8
• 인건비	574.1	572.6	596.6	639.1
• 전산경비	229.2	237.2	255.2	281.6
• 기타경비	267.5	290.6	320.3	296.1
차이(c=a-b)	84.3	62.3	71.2	68.1

1) 20%(한국은행), 80%(한국은행 외 사원 및 준사원)

2) 사원, 준사원 및 참가기관이 어음교환, 지로, 전자금융 등의 업무실적에 따라 납부

3) 예금 및 국공채 이자, 잡수입, 수익사업 이익전입금

(수익사업)

(단위 :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E)
• 매출액	838	886	876	904
•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	105 (12.5)	137 (15.5)	182 (20.8)	206 (22.8)
• 당기순이익	97	171	188	206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보수제도 및 운용관련

① 직위, 직급, 직책 혼재 등 인사관리제도 정비 필요

- 금융결제원은 「인사관리규정」 별표 제1호*에 따라 직위별 대응직급과 직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위, 직급 및 직책이 혼재되어 운영

일반 직원의 직위별 대응직급과 직책(인사관리규정 별표 제1호)

대표직위 (단계별)	대응 직급	직책
부 장	1급	부서장, 실장, 팀장, 반장, 사무소장, 팀원, 역직
수 석 부부장	1급~2급	
부부장	2급~3급	
과 장	3급~4급	팀장, 반장, 사무소장, 팀원, 역직
사 원	4급~6급	팀원, 역직

- 주) 1. 역직 : 전산역, 연구역, 검사역, 조사역, 기술역, 비서역, 자문역, 보좌역
 2. 각종 역직의 직위는 역직명 앞에 부장 및 수석부부장급은 "수석", 부부장급은 "선임", 과장급은 "전문"을 붙여 인사발령 및 대내외 호칭으로 사용함(예) 부부장급 조사역 : 선임조사역]

- 상기 규정 제2조에서 "직급이란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등에 따라 직원을 관리하고자 분류한 직원의 등급"이라고 정의하면서도 동일 직급자에 부서장·팀장·팀원 등 다양한 직책을 부여하는 등 능력·경력과 직책의 상관관계가 낮음

- 한편, 동 규정 제2조에서는 “직위란 임용에 따른 직원의 신분상 지위와 호칭”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일 직위자를 부서장·팀장·팀원 등 다양한 직책을 부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 “부서장급”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의규정이 없음에도 근무성적 평정관련 제118조 내지 제120조 등에서 사용하는 등 유사직위를 정식 직위자와 동일하게 관리·운영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인사운영은 1급 부장, 1급 수석부부장, 2급 수석 부부장, 2급 부부장, 3급 부부장, 3급 과장, 4급 과장, 4급 사원, 5급 사원, 6급 사원 등 계급 체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 평정을 통한 승진·승격결과가 직책부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등 직위·직급·직책 체계를 복잡화시켜 인사운영 및 보수 체계의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직위·직급·직책·승진·승격·승급 등 혼재된 용어 및 직위별 대응직급과직책 등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유사직위 등에 대한 정비도 필요 (통보)

② 직원 공개채용전형 외부위원 참여 미흡

- 금융결제원은 연도별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14년이후 총 4회에 걸쳐 직원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총 95명의 직원을 채용

<‘14년이후 직원 공개채용전형 실시 현황>

연도	종류	공고일	시험명	선발예정 인원	최종선발 인원
2014	-	-	-	-	-
2015	공채	‘15. 4.23	‘15년도 신입직원 채용	20명내외	22명
2015	공채	‘15.10.23	‘16년도 신입직원 채용	19명내외	19명
2016	공채	‘16. 9.29	17년도 신입직원 채용	26명내외	25명
2017	공채	‘17. 9.25	‘18년도 신입직원 채용	25명내외	23명

- 각 공개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1차면접, 2차면접 등의 전형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으나,
 - 각 전형별 심사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원 내부직원으로만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외부위원의 참여는 미흡한 실정***
- * '17년도 신입직원채용시험부터 1차 면접전형에 외부위원 1명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내부위원에게 조언하는 등 그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면접위원으로 보기 어려움

<공개채용시험 전형별 심사위원 구성 현황>

구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서류전형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필기시험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1차면접 (실무자급)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내부직원, 외부위원
2차면접 (임원급)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내부직원

⇒ 채용전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통보)

③ 임직원 성과급 지급제도 개선 필요

- 금융결제원 임원(원장, 감사, 전무, 상무 4) 보수(기본연봉 + 성과연봉)는 정관제29조* 및 내부기준인“임원 보수 및 퇴직급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으며
 - * 정관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결제원 상임이사는 표결권이 없다.
- 임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성과연봉 지급률의 경우, 해당 연도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원장과 감사는 이사회, 그 외의 임원(전무 및 상무)들은 원장이 전적으로 결정
 - * 성과연봉(성과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지급률

- 최근 5년간 결재원 임원의 성과연봉 지급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무 4명의 경우 매년 개인별 지급률 격차를 1%내외 (0%~1.6%)로 운영하고 있어 개인별로 유사한 수준의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
- 한편, 직원 보수는 보수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라 호봉제를 바탕으로 성과급 성격의 성과상여금 제도를 일부 가미*하고 있으나,
 - * 보수규정 제25조(상여금의 지급) ② 성과상여금은 연300% 범위내에서 5, 11월에 직전년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률의 경우 팀장급 이상은 최고등급(380%)과 최저등급(280%)간 차이가 100%p에 불과

⇒ 조직내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인별 지급률 차등확대,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성과급제도 개선 필요(통보)

④ 상임고문에 대한 과도한 지원

- 금융결재원 정관 제30조에서 상임고문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이에 따라 결재원은 전임 원장이 퇴직한 후 매년 1년 단위로 3년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여 결재원 운영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있음

<최근 상임고문 위촉 현황>

성명	위촉기간	고문료
갑○○	'13.4.7~'16.4.6	월 390만원
을○○	'16.4.7~ 현재	월 390만원

- 퇴직 이후 결제원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문* 등의 명분으로 고문료 월 390만원, 업무추진비 월 120~150만원, 전용차량 및 유류비, 본인 및 배우자 종합건강검진비(매년 1인당 100만원 이내)를 지원

* 자문실적('17년) : 결제원내 개별 부서의 질의사항 36건에 대하여 자문

⇒ 전임 원장이 퇴직 후 3년간이나 상임고문으로 위촉하여 고문료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해 과도한 지원으로 개선할 필요 (개선요구)

⑤ 정·현원 관리 부적정

- 금융결제원 직제규정 및 직제시행규칙에 정원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단지 인사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해, **직위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에 대해 적정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금융결제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정원) ① 직위별 정원은 업무의 성격,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의 수행요건과 업무량 등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책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4급 이상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직위별 정원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 금융결제원의 정원에 관한 공식자료는 매년말 총회 안건으로 차년도 사업계획(안)의 별첨으로 첨부되어 보고되는 차년도 정원(안)과 매년초 작성되는 정원책정문서(원장결재)에 기재되어 있으며

- 금융결제원 제2017-9차 총회안건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르면 2018년도 정원(안)은 다음과 같음

2018년도 정원(안)

(단위 : 명)

구 분	2018년 정원(A)	2017년 정원(B)	조 정(A-B)
부서장	19	19	-
팀 장	98	98	-
팀 원	477	472	+5
보좌역	8	26	- 18
사무사원	90	88	+2
계	692	703	-11

- 그러나, 2018. 2. 1. 현재 인력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 정원(안)의 부서장과 팀장의 합인 117명보다 16명 많은 133명을 팀장급이상 직위에 보임하고 있음

인력운영현황 (2018. 2. 1. 현재)

(단위 : 명)

구 분	정원	현원	팀장급 이상	팀원급
1급	20	20	20	-
2급	54	52	52	-
3급	136	135	61	74
4급	247	243	-	243
5급	169	174	-	174
6급	-	-	-	-
계	626	624	133	491

⇒ 총회에 보고된 정원 범위내에서 현원을 운용하는 방안 및 정원관리규정을 조속히 마련·시행할 필요 (기관주의)

나 예산 집행/회계처리관련

① 상위 직급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금융결제원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6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수당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하여 운용해야 하며, 각 부서장은 시간외 근무 명령·실시 등을 하고 있음
- 한편, 동 규정 제11조에서 부부장 이상 직원의 월간 시간외 근무 한도(수석부부장 15시간, 부부장 20시간)를 정하고 있음에 따라
 - '14년 ~ '17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부서장 직책이 가능한 2급과 3급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되었으며, '17년의 경우 3급 직원의 평균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액이 5급 직원의 평균 지급액 보다 많음

'14년이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총액	평균
2급	38,034	679	54,722	1,014	52,089	868	46,608	804
3급	412,476	3,381	425,935	3,491	421,723	3,321	490,308	3,632
4급	1,261,873	5,130	1,294,685	5,605	1,369,590	5,659	1,142,802	4,703
5급	692,632	3,724	585,487	3,548	552,203	3,388	392,756	2,567
6급	11,284	2,821	3,668	611	-	-	-	-

- 시간외 근무 명령·실시 등 시간외 근무를 관리·통제하고 있는 부서장들에게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부서장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필요 (개선요구)

② 국외여비(숙박비) 지급제도 개선 필요

- 금융결제원 여비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3호는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일당 체재비에 포함시켜 지급

<별표 제3호> 국외여비 지급표(일당체재비)

(단위:미\$)

구 분	가	나	다
임 원	240 + 숙박실비	230 + 숙박실비	220 + 숙박실비
부·실장급	450	380	320
팀장급	370	330	300
과장급	320	290	270
사원급	280	260	240

주) 일당 체재비의 구성은 숙박료 45%, 식비 30%, 일당 25%

- 일당 체재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정액경비인데, 숙박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체재비에 포함하여 지급함에 따라 숙박비를 숙박 일수가 아닌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

⇒ 숙박비가 실제 숙박한 일수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개선요구)

③ 지방 사무소 운영 부적정

- 금융결제원은 정관*에 따라 거점 대도시내 금융결제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명목으로 총 4개의(대전, 광주, 대구, 부산) 지방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각 사무소는 3명이(사무소장1명, 팀원2명) 근무

* 제3조(사무소) 결제원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지방사무소 운영 현황 >

('17년 기준, 단위:천원)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월 임대료(관리비) /보증금	1,787 / 261,720	2,654 / 293,895	2,255 / 339,900	2,525 / 242,000
연간 사무소 운영비	447,612	413,227	414,796	398,999
직원사택 지원(인원)	438,000(3명)	155,000(1명)	230,000(1명)	200,000(1명)

○ 사무소 업무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부도내역 영업점 확인 및 CMS 이용기관 현장 실사, 전자금융 이용 촉진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 실제 사무소 문서목록을 확인한 결과, 연간 처리문서 100여건 중 대부분은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서무 업무임

< 최근 3년간 지방사무소 문서처리내역 >

		대전	광주	부산	대구
2017	부도신고 취소	1	4	6	1
	회의개최	2	-	9	6
	사무소 운영	85	74	88	99
2016	부도신고 취소	2	3	5	2
	회의개최	5	3	6	2
	사무소 운영	84	63	89	91
2015	부도신고 취소	1	1	5	2
	회의개최	3	3	10	2
	사무소 운영	88	72	93	84

⇒ 현재 지방사무소가 수행하는 부도신고 취소 등 단순업무의 개선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지방사무소를 축소 (개선요구)

④ 해외체험연수 운영 부적정

- 금융결제원은 연수규정 제6조에 근거한 기타역량연수*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해외체험연수 글로벌챌린지과정 (이하 “글로벌챌린지과정”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고 있으며,

* (기타역량연수): 다양한 분야의 이론, 지식 습득과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반연수

- ‘14년~’17년 기간 중 총 153명을 연수자로 선정하여 총 306,000천원을 “경비 - 연수비” 항목으로 지급

<‘14~’17년 글로벌챌린지과정 운영 현황>

연도	집행금액	대 상 자	비고
2014년	78,000천원	경영기획부 갑○○ 등 39명	‘13년 37명
2015년	76,000천원	경영기획부 을○○ 등 38명	
2016년	76,000천원	경영기획부 병○○ 등 38명	
2017년	76,000천원	경영기획부 정○○ 등 38명	
계	306,000천원	총 153명	

- 금융결제원은 부서장* 및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별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 없이 전원을 연수대상자로 선발하고 있으며,

* 35명 부서별 연수대상인원에 따라 안분하여 추천 / ** 3명 추천

- 선발된 연수대상자에게 5월~11월 중 7 영업일 이내의 개인별 국외 체험연수 기회 부여 및 200만원 이내의 경비를 지급

- 글로벌챌린지과정은 연수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타역량연수이므로 임직원의 다양한 분야의 이론, 지식 습득과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수과정이 되어야 하나,

- 연수목적이 해외 ATM 기기 및 신용카드 사용 체험 등 단순 체험이 대부분으로, 유명 관광지 위주의 동선 편성, 여행사 패키지 관광상품 이용, 가족 및 지인 동반여행의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연수의 실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연수주관부서에는 연수계획서를 검토하는 과정도 없이 연수를 허가하였으며,
- 또한, 연수 종료 후 지출증빙 미비, 연수시기 변경, 결과보고서 지연 및 미제출 등 연수과정 관리·운영이 소홀

⇒ 해외연수과정이 단순 체험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향후 본래의 연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외연수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개선할 필요 (개선요구)

⑤ 일부 재무제표 항목의 계정 분류 오류

- 금융결제원의 재무제표 검토 결과, ① 예수금 계정과목, ② 리스미지급금, ③ 현금흐름표의 투자·재무활동에서 구분 오류가 발견

- ① 금융결제원은 당기 신용카드사용액 중 미결제금액을 예수금에 계상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은 당기에 발생하였더라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아니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미지급비용으로 분류해야함

< 예수금 내역 중 신용카드사용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말	2016년말	2015년말
일반사업	178	224	237
수익사업	88	90	121

- ② 금융결제원 수익사업의 17년말 재무제표에서 리스미지급금을 모두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나, 18년 중 지급예정인 금액은 유동부채*로 분류해야함

- *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 ** (제13장 '리스' 문단 실13.6)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채항목으로 표시한다.
- 또한 금융결제원의 「회계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7호>의 유동 부채 항목 중 리스미지급금에 대한 설명이 누락

< 리스미지급금 유동성 분류 >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명	17년말 비유동부채 계상액	18년 지급예정액	계정분류 오류금액
리스미지급금	2,644	907	907

③ 금융결제원의 수익사업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료의 지급'을 투자활동 현금유출^{*1)}로 구분하였으나, '리스료의 지급'은 리스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현금유출에 해당하여 재무활동현금유출^{*2)}로 구분해야함

*1) 현금의 대여, 단기투자자산·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로서 취득 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

*2)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

** (K-IFRS 제1116호 '리스' 문단 50)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재무활동으로 분류

< 현금흐름표상 리스료의 지급액 >

(단위 : 백만원)

투자활동현금유출	2017	2016	2015
리스료의 지급	907	703	530

⇒ **관련규정에 따라 예수금 중 신용카드사용액, 리스미지급금 및 리스료 지급 등 일부 계정분류 오류를 시정할 필요(사정요구)**

⑥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부적정

○ 금융결제원은 「회계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7호>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으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산정하여 부채로 계상할 필요.

*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8)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매 보고기간('14년~'17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중 일부만 퇴직급여충당부채에 계상하여 부채를 과소 계상

< 퇴직급여 충당부채 과소계상 내역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도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필요액	재무제표 금액	적립비율 (%)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금액
일반사업	2014	48,833	38,821	79.5%	10,012
	2015	49,673	31,899	64.2%	17,774
	2016	54,684	33,173	60.7%	21,511
	2017	59,049	51,110	86.5%	7,939
수익사업	2014	11,058	6,613	59.8%	4,445
	2015	11,863	8,594	72.4%	3,269
	2016	13,184	10,985	83.3%	2,199
	2017	14,648	12,301	84.0%	2,347

⇒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비영리조직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퇴직급여충당금의 충당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 (개선요구)

⑦ 회계처리 원칙 정비 필요

- 금융결제원의 「회계규정」 제23조에서는 현금주의로 수입과 지출을 계상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금융결제원에서는 수지결산서상 경비 항목(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였고, 다른 항목(예: 소유물비)에 대하여는 현금주의로 표시
- 또한 수지결산서에 현금주의로 표시한 항목을 대차대조표에는 발생주의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회계처리의 비일관성이 발생
- 이러한 회계처리 방법은 금융결제원의 회계규정에서도 설명되지 않았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회계처리도 아님
- ※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하는 통일된 회계기준을 제정하였음 (비영리조직회계기준, '18.1.1. 시행)

⇒ 재무정보를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처리하여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에서 마련한 '비영리조직회계기준'을 참고하여 회계처리 원칙을 정비할 필요 (권고)

다 복리후생

① 상품권 지급 부적정

- 금융결제원은 복지규정 등 제 규정에 온누리상품권의 지급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14.8.20. 실시된 2014년 임시 노사협의회에서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2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와 합의한 후, '14.8.28. 온누리상품권 구매대금으로 141,250천원을 지급
 - 또한 '15.5.11. 실시된 2015년 임시 노사협의회에서도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3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15.6.23. 온누리상품권 구매대금으로 174,600천원을 지급

⇒ 규정상 근거없이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기관주의)

② 자가운전보조비 관리 부적정

- 금융결제원은 「자가운전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에 대해 자가운전보조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직원들에게는 「복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통근비(월 23만원)를 지급

<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조건
부서장	470,000	시내 출장횟수 월 4회 이상
팀 장	320,000	
팀 원	230,000	시내 출장횟수 월 7회 이상

- 한편,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출장내역을 제출받아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시내 출장현황을 확인해야 함에도
- 출장내역 관련 문서나 출장상신 등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관리가 부적정

⇒ 향후 자가운전보조비가 부당하게 지급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 (개선요구)

③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근무시간 현실화 필요

- 금융결제원 「보수규정」 제23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2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

*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시간 당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 1.5는 50%를 가산한 비율

- 그러나, 「취업규칙」 제12조에서는 일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과 차이가 발생
- 따라서, 「취업규칙」의 일일 근무시간(7시간)이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산정과 결부될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취지와 「보수규정」 제23조의 취지와는 달리 과도하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될 우려

⇒ 대부분 금융권의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점을 참고하여 1일 근무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 (통보)

라 고유업무

① 모바일전자지갑(뱅크월렛) 서비스 해지 및 환불절차 미흡

- 금융결제원과 16개 국내은행이 공동으로 시행중인 모바일전자지갑 '뱅크월렛서비스'는 USIM형¹⁾과 네트워크형²⁾ 전자지갑 2종으로 운영중

* 1) 통신사에서 발급한 USIM 실물에 잔액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방식('16.12.31이후 신규 중지)
2) 잔액을 각 은행서버에서 관리하는 방식

- 이중 USIM형 전자지갑은 고객이 USIM을 분실한 경우 잔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구조*이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재가입하려면 동 USIM의 잔액이 없도록(0원) 하여야 하나,

* USIM상에 전자지갑 잔액이 기록되므로 분실시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네트워크형 전자지갑은 각 은행 서버에 잔액이 기록되어 USIM과 관계없이 환불 가능)

- 사용자가 USIM을 분실하였을 경우 각 은행들이 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미비하여, 사용자가 USIM에 저장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없고 동 서비스를 해지·재가입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

<뱅크월렛 이용자 현황('18.2월 현재)>

구분	네트워크형	USIM형
발급고객수	61,365	7,943
실 이용자수*	4,289	-

* 최근 3개월('17.11월~'18.1월)중 보내기, 받기, 결제, 충전서비스중 하나 이상 이용 고객 (USIM형 서비스는 '16.12.31이후 이용건수 없음)

⇒ 잔존하는 USIM형 전자지갑 사용자 요청시 뱅크월렛 서비스를 해지·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USIM에 저장된 잔액을 처리(환급 등)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동 절차를 사용자에게 고지할 것 (개선요구)

② 공동규약 체결시 신용정보처리 관련 교육 의무화

- 금융결제원은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함)들과 11개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사항을 ‘공동규약’에 반영하고, 동 정보처리에 대한 수탁자로서 업무를 수행중

* 어음교환업무, 자기앞수표 실시간정보교환, 기업구매자금어음 정보교환, 전자어음 업무, B2B업무, 온누리상품권 정보교환업무, 주택청약공동업무, 정보중계업무,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 국가간 공동망업무, 바이오정보분산관리업무 등

- 그러나 상기 공동규약상에는 수탁자로서 이행해야 할 교육의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신용정보처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우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제5항 등

⇒ 공동규약 제·개정시 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교육의무 조항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신용정보처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 (개선요구)

③ 수수료 수익발생 공동사업 관련 회비분담기준 개선 필요

- 금융결제원은 사원, 준사원 및 특별참가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함)들과 32개의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각 참가기관의 회비분담 기준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중

* 「금융결제원 회비분담규정」(’07.1.12 제정, ’16.12.29 최종개정)

- 그러나, 참가기관이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수익 발생액 비중을 차후 회비분담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하나,

- 아래 2개 공동사업의 경우 각 참가기관의 수익 발생분을 반영하지 않고 처리건수로만 분담금을 산정하고 있어, 각 참가기관별 분담률이 공정하게 산출되지 않을 우려

<수익분 미반영 사업 목록>

사업명	수익발생처	총 분담회비(백만원)			회비분담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현금카드직불결제	가맹점수수료	1,682 ¹⁾	1,798 ¹⁾	1,617 ¹⁾	균등부담(25%), 결제 및 이체건수에 따라 차등부담(75%) ²⁾
전자화폐결제					

* 1) 전자화폐, 폰ATM사업 실적과 합산하여 분담

2) 잠정조치이나 조건 충족 이후에도 조건 충족시 수수료 분담기준은 없음

⇒ 금융결제원이 중개기관으로서 운영하는 상기 2개 공동사업의 회비분담시 회원사의 수수료 수익금액을 일정 비율로 반영하여, 회비분담금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참가기관들과 협의하여 마련·시행할 필요 (권고)

마 IT관련 업무

① 서버보안관리 미흡

- 금융결제원의 『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 제21조(서버보안관리)에 의하면 서버운영주관부서장은 소관 서버에 대하여 보안패치 필요시 지체 없이 적용하여야 함
-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기술지원종료가 되어 신규보안패치가 불가능한 Window2003 서버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사용자들의 시스템 접속용 추적감사 시스템 1대는 '15.4.20.이후 신규 보안패치**가 적용되지 않았음

* K-Cash 온라인 결제시스템 용도로 2008년 도입하였고 윈도우2003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지하였음

** '17.5.12 공격시작 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 등에 대한 보안패치 미적용

⇒ 향후 모든 서버에 대하여 지체없이 보안패치를 적용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 내부규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개선요구)

② 단말기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 소홀

- 금융결제원 『정보보호규정 시행세칙』 제16조(단말기 보안관리)에 따라 각 부서장은 소관 단말기에 대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활성화 및 최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 제23조(네트워크 보안관리)에 따라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여야함

- 그러나 모바일 개발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PC인 MacOS 단말기 9대는 금융결제원 모바일앱의 소스코드 등 중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보안프로그램을 미설치 하였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였음

⇒ 향후 단말기 및 네트워크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도록 운용하여 관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개선요구)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보수 제도관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위·직급·직책 혼재 등 인사관리제도 정비 필요 ■ 직원 공개채용전형 외부위원 참여 미흡 ■ 임직원 성과급 지급 운영 개선 필요 ■ 상임고문에 대한 과도한 지원 ■ 정·현원 관리 부적정 	<p>통보</p> <p>통보</p> <p>통보</p> <p>개선요구</p> <p>기관주의</p>
예산집행/ 회계처리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직급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국외여비(숙박비) 지급제도 개선 필요 ■ 지방 사무소 운영 부적정 ■ 해외체험연수 운영 부적정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재무제표 항목의 계정분류 오류 ■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 부적정 ■ 회계처리 원칙 정비 필요 	<p>개선요구</p> <p>개선요구</p> <p>개선요구</p> <p>개선요구</p> <hr style="border-top: 1px dotted black;"/> <p>시정요구</p> <p>개선요구</p> <p>권고</p>
복리후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권 지급 부적정 ■ 자가운전보조비 지급관리 부적정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 개선 필요 	<p>기관주의</p> <p>개선요구</p> <p>통보</p>
고유업무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전자지갑 서비스 해지 및 환불절차 미흡 ■ 공동규약 체결시 신용정보처리교육관련 의무반영 필요 ■ 수수료 수익발생 공동사업 관련 회비분담기준 개선필요 	<p>개선요구</p> <p>개선요구</p> <p>권고</p>
IT업무관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보안관리 불철저 ■ 단말기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정보보호대책 소홀 	<p>개선요구</p> <p>개선요구</p>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징계 또는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시정요구 : 2개월 이내에 조치

다. 개선요구, 권고, 통보 등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